

보도시점

2025. 12. 9.(화) 석간

2025. 12. 9.(화) 06:00

배포 2025. 12. 8.(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
-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26.3.27.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4조 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시행령 제5조 제정)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정)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

여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시행규칙 제14조)

< 전문기관 지정 대상별 역할 >

전문기관	업무·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정책 지원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

그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 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별첨>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단 장	장영진 (044-202-3030)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구재 관 (044-202-3043)



<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

- (제명) 각종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이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
- (정의)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통합 연계·제공'을 '통합 지원'으로 하고 대상자를 노인 외 장애인도 포괄(제2조)
- (법률관계, 책무) 이 법의 통합지원 절차가 다른법에 우선함(제3조),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부여(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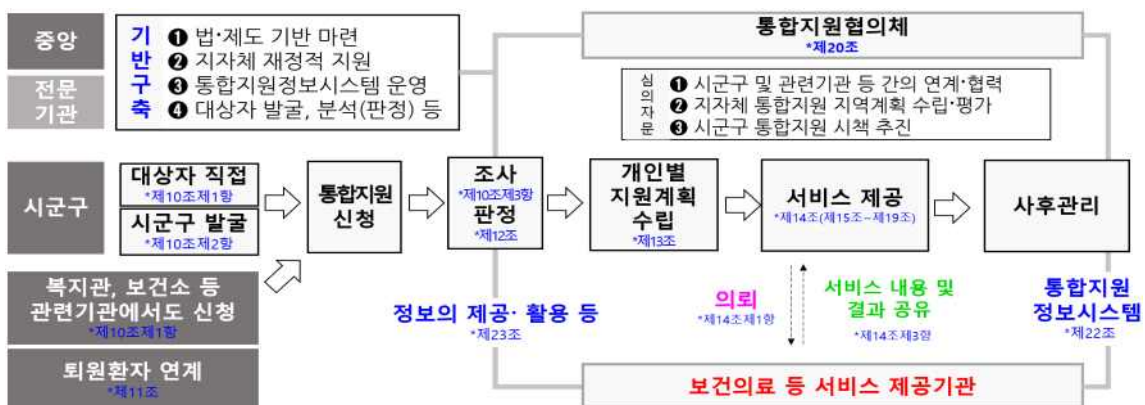
<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 제9조) >

- (계획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제5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행(제6조)
- (성과평가 등) 5년 마다 실태를 조사하고(제7조)하고, 매년 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제9조)

<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 ~ 제14조) >

- (신청·발굴·조사) 본인 등(가족, 관련기관 담당자)이 신청 또는 시군구에서 발굴, 직권 신청(제10조), 의료기관은 퇴원환자 통보(제11조)
- (종합판정) 의료·요양 필요도 등 종합판정(전문기관 위탁), 안내(제12조)
- (통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제13조), 시군구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의뢰·연계하고, 정보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제14조)

< 통합지원 절차도 >



<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 ~ 제19조) >

-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제15조)
 -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진료, 간호서비스(제1~2호)
 - 재활(제3호) 및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제4호)
 - 호스피스 서비스(제5호), 방문 구강관리(제6호) 및 방문 복약지도(제7호) 등
- (건강관리) 노인성질환, 장애, 만성질환 등 예방·완화(제16조)
-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급여 및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제17조)
- (일상생활돌봄) 대상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제18조)
 - ①가사지원, ②의료기관 등 이동지원, ③보조기기, ④주야간보호
 - ⑤AI·IoT 안전·건강 확인, ⑥주거지원, ⑦퇴원(소)자 복귀지원, ⑧맞춤형 급여 안내
- (가족 등 지원) 대상자 가족, 보호자 등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관리 노력, 이에 대한 상담 및 안내(제19조)

< 제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 (제20조 ~ 제25조) >

- (협의체·전담조직) 시도·시군구에 심의·자문을 위한 통합지원 협의체(제20조) 및 시군구 전담조직* 등 설치 명시(제21조)
 - * 대상자 관리, 지역자원 발굴·제공,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예산 확보·조정 등
- (정보 제공·활용) 각종 자료·정보 처리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제22조) 및 대상자 발굴 등 위한 정보 연계(제23조)
- (전문인력, 전문기관) 코디네이팅 인력 양성·교육기관 지정·지원(제24조), 대상자 발굴·조사, 종합판정, 평가 등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지원(제25조)

< 제6장 보칙 (제26조 ~ 제29조), 제7장 벌칙(제30조) 및 부칙 >

- (시범사업 등) 시범사업(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제29조)
- (비용지원 등) 예산지원 근거, 평가 반영한 차등 지원(제28조)
- (비밀유지 등)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제27조, 제30조)
- (부칙)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부칙 제1조), 사전준비(부칙 제2조)